

#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

## 14.A 도입

- 14.A.1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의 파트 C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종합적이고, 조율되어 있으며, 기관 간의 서비스 시스템이 되도록 의회에서 기안한 법률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인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며 파트 C는 이러한 프로그램들간의 조율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트 C에 대한 자금 조달은 공공 및 민간 보험을 포함한 연방, 주정부 및 지역 자금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 자금 조달이 모든 조기 개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기 개입 서비스에 공공 비용 자금이 조달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자녀의 프로그램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ESIT의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 요건에 따른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한 민간 의료 서비스/보험 및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 이용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 14.A.2 최대한 많은 수의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리소스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Early Support Program for Infants and Toddlers, ESIT)의 의무입니다. 또한 ESIT는 아동들에게 발달상의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러한 리소스가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SIT가 광범위한 자격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보험, 민간보험 및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가용 자금원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 14.A.3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시기적절한 제공의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SIT는 IDEA 파트 C의 자금을 사용하여 공인된 서비스와 기능의 제공자(34 CFR §303.16에 정의된 보건 서비스, [그러나 의료 서비스가 아닌], 34 CFR §§303.115에서 303.117 및 §§303.301에서 303.320에 기술된 아동 찾기 시스템의 기능, §303.321의 평가 및 사정)에게 해당 결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지연된 변제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Program  
P.O. Box 40970  
Olympia, WA 98504-0970  
무료전화: 1-866-482-4325  
[www.dcyf.wa.gov](http://www.dcyf.wa.gov)

이 문서의 사본을 다른 형식 또는 언어로 원하시는 경우, DCYF Constituent Relations (1-800-723-4831 | 360-902-8060, [ConstRelations@dcyf.wa.gov](mailto:ConstRelations@dcyf.wa.gov))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DCYF PUBLICATION FS\_0033 |  
DEL 11-019 KO (01-2020) Korean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 14.B 정책

### 14.B.1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는 기능과 서비스

- (a) 34 CFR §303.521(b) (2011)에 의거, 다음 IDEA, 파트 C 기능 및 서비스는 조기 영유아 개입 프로그램 (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program, ESIT) 및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공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며 가족에게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303.301에서 303.303의 아동 찾기 요건 실행.
  - (2) §303.320에 따른 평가 및 사정, 그리고 §303.13(b)의 평가 및 사정과 관련된 기능.
  - (3) 서비스 조율 서비스 (가족 리소스 코디네이션), §§303.13(b)(11) 및 303.33에 정의.
  - (4) 다음에 관련된 행정 및 조율 활동—
    - (i) §§303.342에서 303.345에 따른 IFSP 및 임시 IFSP의 개발, 검토 및 평가
    - (ii) 34 CFR §303의 서브파트 E의 실행, 절차적 보호조치 및 서브파트 D의 조기개입 서비스의 주 전체적인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
- (b) **확인:** 34 CFR §303.521(a)(4)(ii)에 의거, 만약 가족이 “지불 불능”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IFSP에 식별된 모든 모든 파트 C 서비스는 무료로 해당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해당 가족의 지불 불능으로 인해 파트 C 서비스의 지연이나 거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14.B.2 가족 비용 참여(FCP)에 따른 기능 및 서비스

- (a) 34 CFR §303.521(b)에 의거, 다음 기능과 서비스는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본인부담금, 공동부담금, 공제액 또는 수수료가 가족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지원 기술 기기
  - (2) 지원 기술 서비스
  - (3) 청각 서비스
  - (4) 카운셀링
  - (5) 보건 서비스
  - (6) 간호 서비스
  - (7) 영양 서비스
  - (8) 작업치료
  - (9) 물리치료
  - (10) 심리 서비스
  - (11) 사회복지 서비스
  - (12) 언어치료 서비스

- (b) **확인:** 34 CFR §303.521 (a) (4)(iii)에 의거, 가족은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의 적용을 받는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실제 비용 이상의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 결제를 위해 지정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감안).

#### 14.B.3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의 적용을 받는 워싱턴주의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결제 및 수수료 체계에 병합된 자금원

지불 불능이 결정되지 않는 한,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 모든 가족은 그들의 공공 보험 혜택, 민간 보험 혜택 또는 수수료 납부를 통하여 자녀의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 자금 출처가 ESIT의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에 도입되었습니다.

- (a) 공공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
- (b)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 (c) 수수료

#### 14.B.4 가족 소득 및 비용 정보

- (a) 공공 또는 민간 보험 청구 이전에, 가족들에게 ESIT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가 제공됩니다. 적절한 경우, 가족들은 사전 서면 통보,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이용 동의 및 소득과 비용 확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b) 가족의 가족 리소스 코디네이터(FRC)는 적합한 경우 가족을 도와 사전 서면 통보,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이용 동의 및 소득과 비용 확인 양식을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c) 사전 서면 통보,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이용 동의 및 소득과 비용 확인 양식을 해당 가족에 배정된 FRC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d) 만약 가족 소득과 지출 정보에 따른 연간 조정 소득이 가족 크기 기준 연방 빈곤 수준(FPL)의 200% 미만일 경우, 해당 가족은 보험 본인 부담금, 공동부담금, 보험 공제액 또는 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자의 마지막 구제처로서 다른 기관의 자금 또는 파트 C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 (e) 만약 가족 소득과 지출 정보에 따른 연간 조정 소득이 가족 크기 기준 연방 빈곤 수준(FPL)의 200% 이상일 경우, 해당 가족은 해당되는 경우 보험 본인 부담금, 공동부담금, 보험 공제액 또는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4.B.5 공공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사용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

- (a) 34 CFR§303.520(a)(2)(i)에 의거, ESIT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등록된 가족은 자녀를 위한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에 가입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b) 34 CFR§303.520(a)(3)에 의거, 파트 C 서비스 결제를 위해 자녀나 부모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사용하기 전에 ESIT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가 제공됩니다.
- (c) 34 CFR§303.520(a)(2)(ii)에 의거, 조기 개입 제공자는 만약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의 이용이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해당 프로그램 하에서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평생 보장 또는 기타 보험 혜택이 감소되는 경우,
  - (2)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을 해당 자녀의 부모가 지불하게 되는 경우,

- (3) 해당 자녀나 부모에 대한 공공 혜택 또는 보험료의 인상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
  - (4) 총 보건 관련 지출을 토대로 가족 및 커뮤니티 기반의 면제 혜택에 대한 자녀 또는 해당 자녀 부모의 자격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 (d) 34 CFR §303.520(b)(1)에 의거, 가족에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와 민간보험이 모두 있는 경우, 조기 개입 제공자는 다음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 (1) 해당 가족의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을 이용한 IFSP에 포함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결제,
  - (2)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을 이용한 해당 아동의 IFSP의 서비스 빈도, 길이, 기간 및 집중도의 증가에 대한 결제.
- (e) **확인:** 34 CFR §303.521(a)(4)(iv)에 의거, 공공 보험 또는 혜택을 받는 가족은 공공 보험 또는 혜택이나 민간 보험이 없는 가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 (f) 조기 개입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1) 34 CFR §§303.414 and 303.520(a)(3)(i)에 의거,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에 등록된 가족에게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청구 목적으로 개인 신원파악 가능 정보가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에 제공됨을 알립니다.
  - (2) 34 CFR §303.520(a)(3)(iii)에 의거, 각 가족에 청구 목적을 위한 개인 신원파악 가능 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 (3) 34 CFR §303.520(a)(3)(iv)에 의거,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의 이용 결과로 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일반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서면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g) 조기 개입 제공자는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h) 34 CFR §303.520(a)(2)(iii)에 의거, 만약 부모가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 등록 또는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기 개입 제공자는 해당 부모가 동의한 IFSP에 따라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의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해당 아동 또는 가족에 대한 이 파트 하에서의 어떠한 서비스도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
- (i)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에 대한 자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가족이 소득 및 비용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가족은 워싱턴주의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 14.B.6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이용

- (a) 34 CFR §303.520(b)(1)(iii)에 의거, 파트 C 서비스 지불을 위해 아동 또는 부모의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가족에 ESIT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를 제공합니다.
- (b) 34 CFR §303.520(b)(1)(i)에 의거, 조기 개입 제공자는 다음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해당 가족의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을 이용한 IFSP에 포함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결제,
  - (2)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을 이용한 해당 아동의 IFSP의 서비스 빈도, 길이, 기간 및 집중도의 증가에 대한 결제.
- (c) **확인:** 34 CFR §303.521(a)(4)(iv)에 의거, 민간 보험에 가입한 가족은 공공 보험 또는 혜택이나 민간 보험이 없는 가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 (d) 34 CFR §303.520(b)(1)(ii)에 의거, 조기 개입 제공자들은 다음과 같이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의 이용 결과로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일반 카테고리에 대한 서면 명세를 제공합니다.
  - (1) 본인부담금, 공동부담금, 보험료 또는 공제액 또는 해당 아동, 부모 또는 해당 아동의 가족에 대한 보험정책 하의 연간 또는 평생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한도로 인한 혜택의 상실 등 기타 장기비용,
  - (2) 가족의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의 이용으로 해당 정책 하에 보장되는 장애가 있는 아동, 부모 또는 해당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의 이용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 보험 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이 중단될 수도 있는 가능성,
  - (3)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보험료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
- (e) 조기 개입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f) 34 CFR §303.520(a)(2)(iii)에 의거, 만약 부모가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기 개입 제공자는 해당 부모가 동의한 IFSP에 따라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동의를 없다고 할지라도 해당 아동 또는 가족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도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 부모나 가족이 자신의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족은 워싱턴주의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 (g) 본인 부담금, 공동 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청구받은 모든 가족의 경우, 최종 구제 자금의 파트 C 지불기관을 포함한 기타 기관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 (h) 본인부담금, 공동부담금 또는 공제액 납부를 90일 이상 연체한 가족의 경우, 지불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에 따른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이는 해당 가족, 가족 리소스 코디네이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보가 발송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 14.B.7 부모의 지불 능력에 대한 정의

ESIT는 10%를 초과하는 허용 가능한 미변제 비용에 대해 조정된 연방 빈곤 수준(FPL)의 200% 또는 그 이상인 가족의 조정된 전체 연간 소득을 **지불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 (a) 한 가족의 월간 수수료 지불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비용 정보가 필요합니다.
- (b) 허용 가능한 미변제 비용: 보험료, 공제액, 본인부담금 및 공동부담금을 포함한 의료 및 치과 비용
  - (1) 보험료, 공제액, 본인부담금 및 공동부담금을 포함한 의료 및 치과 비용
  - (2)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정신건강 치료
  - (3) 면허가 있는 가정 보건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 보건 관리
  - (4) 자녀 양육비/위자료 지불
  - (5) 부모가 일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발생하는 자녀 보육비.
- (c) 공공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또는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가족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사전 서면 통보,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이용 동의 및 소득과 비용 확인 양식의 검토와 작성을 요청합니다.
  - (1) 소득 및 비용 정보,
  - (2) 개인 신원파악 가능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및
  - (3)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보장 이용에 대한 동의.
- (d) 가족이 요청 시 적어도 매년 또는 자주 해당 가족의 지불 능력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 14.B.8 부모의 지불 불능에 대한 정의

ESIT는 10%를 초과하는 허용 가능한 미변제 비용에 대해 조정된 연방 빈곤 수준(FPL)의 200% 미만인 가족의 조정된 전체 연간 소득을 **지불 불능**으로 정의했습니다.

- (a) 한 가족의 지불 불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비용 정보가 필요합니다.
- (b) 허용되는 미변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료, 공제액, 본인부담금 및 공동부담금을 포함한 의료 및 치과 비용
  - (2)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정신건강 치료
  - (3) 면허가 있는 가정 보건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 보건 관리
  - (4) 자녀 양육비/위자료 지불
  - (5) 부모가 일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발생하는 자녀 보육비.
- (c) 공공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 또는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가족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사전 서면 통보,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이용 동의 및 소득과 비용 확인 양식의 검토와 작성을 요청합니다.
  - (1) 소득 및 비용 정보,
  - (2) 개인 신원파악 가능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및
  - (3)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보장 이용에 대한 동의.
- (d) 가족이 요청 시 적어도 매년 또는 자주 해당 가족의 지불 능력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 14.B.9 수수료

- (a) 34 CFR §303.521에 의거, ESIT는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가족에 대해,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에 의거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월간 수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 (1) 해당 가족이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 (2) 해당 가족이 그들의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 공공 보험 케어 보장/보험의 이용을 거부하고 조정된 연간 소득이 200% FPL이거나 또는 그 이상인 경우,
  - (3) 해당 가족에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 또는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이 없는 경우.
- (b) 소득 및 비용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가족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결제로 수령되는 다른 공공 자금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감안하여, 가족 크기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월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c) 월간 수수료 명세표는 연방 빈곤 수준(FPL)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되며 연간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d) 만약 가족에서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에 따른 조기 개입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그들의 공공 및/또는 민간보험을 이용하도록 동의하는 경우, 해당 가족은 월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e)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에 가입한 가족이, “지불 불능”의 정의를 충족하고,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결제로써 이 자금원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IFSP에 정의된 모든 파트 C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해당 가족의 지불 불능으로 인해 파트 C 서비스의 지연이나 거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f) 아동용 Apple Health/Medicaid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 및 비용 정보 제공을 거부한 가족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결제로 수령되는 다른 공공 자금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감안하여, 가족 크기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월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g) 그들의 민간 의료 서비스 보장/보험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고 소득 및 비용 정보를 제공한 가족에는 가족 규모와 조정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h) 가족의 규모, 소득 및/또는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가족은 언제든지 월간 수수료를 다시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간 수수료에 대한 모든 조정은 재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 (i) 월간 수수료 지불을 90일 이상 연체한 가족의 경우 수락 가능한 지불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에 따른 자녀에 대한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이는 해당 가족, 가족 리소스 코디네이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보가 발송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 14.B.10 절차적 안전 조치 요건

- (a) 34 CFR §303.521(e)에 의거, 가족에 다음과 관련된 절차적 보호조치를 상세 기술한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 (1) 수수료 부과,
  - (2) 부모의 지불 능력 또는 불능에 대한 주정부의 판단,
  - (3) 공공 또는 민간 보험 청구.
- (b) 부모는 다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1) 34 CFR §303.431에 따른 중재에 참여
  - (2) 34 CFR §303.436 또는 §303.441 중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 요청
  - (3) 34 CFR §303.434에 의거 주정부 불만 제출 및/또는
  - (4) 재정 클레임의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수립한 모든 절차
- (c) 34 CFR §303.521(e)(2)(i)에 의거 ESIT 제공자는 다음 요청 시 자체 결제 및 수수료 정책 체계의 서면 사본을 부모에게 제공합니다.
  - (1) 조기 개입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동의는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플랜(IFSP) 회의 때 확보됩니다.
  - (2) 파트 C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한 민간보험의 이용에 대한 동의.